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1
----------	------

제안년월일 : 2024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제안경위

- 제32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24.12.17.)는 허훈 의원이 2022년 8월 30일에 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를 토대로 조례안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217호는 민간위탁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의 개념을 정비하고, 종전에 시의회 동의사항이던 재위탁을 보고 사항으로 변경하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의 위촉 기준을 상세화하는 한편,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던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
- 그러나 의안번호 제217호가 보류되어 있던 중에 개정대상이었던 조문 중 일부가 먼저 개정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 재위탁을 보고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통제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안번호 제217호의 주요 개정사유인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저촉 소지”는 해소되었으나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6호).
- 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촉 기준을 상세화함(안 제5조제3항).
- 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제7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독립된 사업비 결산 감사인”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u>“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u></p> <p>6. <u>“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p> <p>①·② (생략)</p> <p>③ <u>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u></p> <p><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u></p> <p><u><삭 제></u></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u></p> <p>1. <u>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 2. <u>민간위탁 관련 전문가</u> 3. <u>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현행	개정안
<p>④ ~ ⑧ (생략)</p> <p>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략)</p> <p>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u>로부터 <u>사업비 결산서 검사</u>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사업비 결산서 검사</u>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p> <p>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p> <p>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독립된 <u>사업비 결산 검사인</u>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⑨ (생략)</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u>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u>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회계감사</u>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삭 제></p> <p>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u>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u>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⑨ (현행과 같음)</p>